선람	기관의장

익산시시보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604호 2020년 12월 15일

발 행 자 : 익 산 시 청
발 행 처 : 홍보담당관

고 시

- 익산시 고시 제2020-19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 1
- 익산시 고시 제2020-199호 오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 10
- 익산시 고시 제2020-200호 용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 12
- 익산시 고시 제2020-201호 하남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준공인가 고시 ····· 14
- 익산시 고시 제2020-202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 15
- 익산시 고시 제2020-208호 장점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 ····· 20
- 익산시 고시 제2020-209호 두동편백 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 21

회람								

입법예고

- 익산시 공고 제2020-2914호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3
- 익산시 공고 제2020-2918호 익산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0
- 익산시 공고 제2020-2972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7
- 익산시 공고 제2020-2973호 익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64
- 익산시 공고 제2020-2974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81

공 고

- 익산시 중앙동 공고 제2020-12호 ····· 103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익산시 고시 제2020-19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 년 12 월 04 일

익 산 시 장 직인

1. 도로구역 결정내용(변경없음)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군도	21호선	온수~ 시대간	왕궁면 구덕리		왕궁면 구덕리 528-33	왕궁면 구덕리 593-2	-	1.0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왕궁 온수~시대간 도로확포장공사 관련 도로구역 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 : 2019. 1. ~ 2022. 1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및 편입 물건조서 : “붙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익산시청 건설과(063-859-5534)

첨부서류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210㎜×297㎜(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

편 입 토 지 조 서(1/8)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등기부등본)		비고
				지적(㎡)	편입(㎡)		주소	성명	
1	왕궁면 쌍제리	산4-1	임	256	256	3/4		익산시	
						1/4	서울 성북구 장위동 **	이동*	
2	〃	산4-1	임	256	69			익산시	
3	〃	148-5	전	67	67			익산시	
4	〃	148-4	전	190	190			익산시	
5	〃	산2	임	663	663			익산시	
6	〃	122-18	전	226	226			익산시	
7	〃	122-12	임	576	576			익산시	
8	〃	122-21	전	66	66			익산시	
9	〃	122-22	전	54	5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	임기*	
10	〃	122-20	전	112	112			익산시	
11	〃	122-19	임	152	152			익산시	
12	〃	116-4	도	23	23			익산시	
13	〃	116-3	도	43	43			익산시	
14	〃	116-5	전	131	131		익산군 왕궁면 쌍제리 ***	중천천*	
15	〃	116-1	도	36	36			익산시	
16	〃	115-6	전	13	13			익산시	
17	〃	114-6	도	35	35			최석진	미등기

편 입 토 지 조 서(2/8)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등기부등본)		비고
				지적(㎡)	편입(㎡)		주소	성명	
18	왕궁면 쌍제리	114-5	묘	2	2	1/2	충남 부여군 석성면 비당리 ***	최상*	
						1/2	충남 부여군 석성면 비당리 ***	최기*	
19	〃	114-1	도	86	86			최석*	미등기
20	〃	114-4	묘	73	73			최석*	미등기
21	〃	109-2	도	13	13		익산군 왕궁면 쌍제리 ***	중천천*	
22	〃	109-4	전	23	23			익산시	
23	〃	109-3	도	73(22평)	73(22평)		익산군 왕궁면 쌍제리 ***	이정*	
24	〃	564-21	도	7	7			익산시	
25	〃	108-3	도	40	29			국(건설부)	
26	〃	561-10	도	4,107	48			국(건설부)	
27	〃	108-1	도	3	3			국(건설부)	
28	〃	107-1	도	30	30		익산군 왕궁면 구덕리 ***	이진*	
29	〃	106-1	도	66	66			국(건설교통부)	
30	〃	106-6	잡	68	68			익산시	
31	〃	105-3	전	1	1			익산시	
32	〃	95-8	임	63	63			익산시	
33	〃	95-3	도	56	56		익산군 금마면 동고도리 ***	평택*씨 동고도리문중	

편 입 토 지 조 서(3/8)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등기부등본)		비고
				지적(㎡)	편입(㎡)		주소	성명	
34	왕궁면 쌍제리	95-9	임	28	28			익산시	
35	〃	95-7	임	19	19			익산시	
36	〃	95-1	도	30(9평)	30(9평)		익산군 금마면 동고도리 ***	평택*씨 동고도리문중	
37	〃	90-3	전	3	3			익산시	
38	〃	43-3	전	156	156			익산시	
39	〃	43-1	도	63	63		북일면 신리	정순*	미등기
40	〃	42-3	도	7	7		북일면 신리	정순*	미등기
41	〃	42-4	임	540	540			익산시	
42	〃	42-1	도	129	129		북일면 신리	정순*	미등기
43	〃	561-8	도	1,339	1,339			국(건설부)	
44	〃	21-1	도	40	40		북일면 신리	정순*	미등기
45	〃	21-3	임	224	224			익산시	
46	왕궁면 구덕리	593-3	임	156	156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	파평*씨 시호공종중 대표윤병옥	
47	〃	593-8	임	115	115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	파평*씨 시호공종중 대표윤병옥	
48	왕궁면 쌍제리	561-7	도	366	366			국(건설부)	
49	〃	20-1	도	40	40		익산군 왕궁면 발산리 ***	상산순*	
50	〃	20-31	목	27	27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마천2길 **	이희*	

편 입 토 지 조 서(4/8)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등기부등본)		비고
				지적(㎡)	편입(㎡)		주소	성명	
51	왕궁면 쌍제리	19-1	도	10	10			국(건설교통부)	
52	왕궁면 구덕리	528-33	도	350	350			익산시	
53	〃	528-32	전	254	254			익산시	
54	〃	528-31	전	60	60			익산시	
55	〃	528-30	전	43	43			익산시	
56	〃	528-34	전	51	51			익산시	
57	〃	531-4	전	539	539			익산시	
58	〃	531-5	전	173	173			익산시	
59	〃	531-2	도	23	23		익산군 왕궁면 쌍제리 ***	최영*	
60	〃	산185-3	임	2	2			익산시	
61	〃	산185-2	임	79	79			익산시	
62	〃	579-6	전	35	35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	이혁*	
63	〃	579-5	도	23	23			익산시	
64	〃	579-7	도	6	6			익산시	
65	〃	579-8	도	32	32			익산시	
66	〃	579-4	도	90	90		익산군 왕궁면 쌍제리 ***	이남*	
67	〃	579-2	도	3	3		익산군 왕궁면 쌍제리 ***	이남*	

편 입 토 지 조 서(5/8)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등기부등본)		비고
				지적(㎡)	편입(㎡)		주소	성명	
68	왕궁면 구덕리	579-3	도	4	4		익산군 왕궁면 쌍제리 ***	이남*	
69	〃	581-10	대	8	8			익산시	
70	〃	581-12	대	55	55			익산시	
71	〃	581-11	대	208	208			익산시	
72	〃	581-5	도	46	46	10/24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곡동 ***	김형*	
						7/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	김형*	
						7/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5가 **	김형*	
73	〃	581-2	도	30	30	10/24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곡동 ***	김형*	
						7/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	김형*	
						7/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5가 **	김형*	
74	〃	581-4	도	20	20	10/24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곡동 ***	김형*	
						7/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	김형*	
						7/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5가 **	김형*	
75	〃	955-8	도	14	14			국(건설부)	
76	〃	564-35	전	86	86			익산시	
77	〃	564-22	도	26	26			익산시	
78	〃	564-31	전	4	4		익산군 왕궁면 쌍제리 ***	최규*	

편 입 토 지 조 서(6/8)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등기부등본)		비고
				지적(㎡)	편입(㎡)		주소	성명	
79	왕궁면 구덕리	564-37	전	6	6			익산시	
80	〃	564-36	전	32	32		익산군 왕궁면 구덕리 564-24	노영*	
81	〃	564-30	전	44	44	1/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유기전2길*(서완산동1가)	노계*	
						1/6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황암길 **	노귀*	
						1/6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황암길 **	노귀*	
						1/6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황암길 **	노귀*	
						1/6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	노귀*	
						1/6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황암길 **	노혜*	
82	〃	564-2	도	139	139	10/24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곡동 ***	김형*	
						7/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	김형*	
						7/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5가 **	김형*	
83	〃	564-34	전	137	137			익산시	
84	〃	564-20	도	17	17			익산시	
85	〃	564-33	전	116	116			익산시	
86	〃	564-19	도	10(3평)	10(3평)		익산군 왕궁면 쌍제리 ***	이정*	
87	〃	564-32	잡	42	42			익산시	
88	〃	582-4	전	114	114			익산시	

편 입 토 지 조 서(7/8)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등기부등본)		비고
				지적(㎡)	편입(㎡)		주소	성명	
89	왕궁면 구덕리	582-3	도	33	33			익산시	
90	〃	582-2	도	46	46	10/24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곡동 ***	김형*	
						7/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	김형*	
						7/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5가 **	김형*	
91	〃	582-2	도	46	46			익산시	
92	〃	582-2	도	46	46			익산시	
93	〃	582-2	도	46	46			국(건설부)	
94	〃	560-2	도	3	3			익산시	
95	〃	560-12	전	116	116			익산시	
96	〃	955-7	도	102	65			국(건설부)	
97	〃	583-3	전	358	358			익산시	
98	〃	583-2	도	89	89			익산시	
99	〃	955-5	도	34	34		익산군이리	정순*	미등기
100	〃	584-3	전	401	401		익산군이리	정순*	미등기
101	〃	584-2	도	56	56			익산시	
102	〃	592-5	도	50	50		익산군이리	정순*	미등기
103	〃	592-4	도	13	13			익산시	

편 입 토 지 조 서(8/8)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등기부등본)		비고
				지적(㎡)	편입(㎡)		주소	성명	
104	왕궁면 구덕리	592-1	임	125	125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	하동*씨 부사공파종중	
105	〃	592-7	임	2	2			익산시	
106	〃	593-6	임	1,450	1,450			익산시	
107	〃	593-9	임	185	185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	파평*씨 시호공종중 대표윤병옥	
108	〃	593-2	도	340	340		전주군초촌면팔학동	이춘*	미등기
109	〃	1355-3	구	23	23			국(농림수산부)	
110	〃	1358-1	도	110	110			국(농림수산부)	
111	〃	1072-1	답	356	141			익산시	
112	〃	1355-1	구	1,741	258			국(농림수산부)	
113	〃	629-1	도	2,169	191			국(농림수산부)	

익산시 고시 제2020-199호

오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오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61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 및 동 시행령 제82조(각종 고시 및 공고의 방법)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익 산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오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 사업의 위치 : 익산시 오산면 오산리 일원
3. 사 업 목 적 : 농촌지역의 거점공간인 농촌 중심지에 교육, 문화 복지 시설 등 불특정 다수 주민이 이용 가능한 적정 수준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촌 중심지의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기초 서비스 기능 향상 도모
4. 주요사업내용

구 분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비 고
		당 초	변 경	
기초생활기반	늘찬문화복지센터, 늘찬마당	4,442	4,237	
지역경관개선	마을순환산책로	485	522	
지역역량강화	역량강화사업 및 부대비용등	1,073	1,241	
합 계		6,000	6,000	

❍ 변경사유 : 현장실정에 따라 기능별 사업비 조정

5. 사 업 비 : 6,000백만원(국비 4,200 도비 696 시비 1,104)

6. 사업시행 기간 : 2017.1 ~ 2021. 12 (5년간)

7. 사업시행자 : 익산시장[일괄위(수)탁: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농촌활력과(☎063-859 -7222) 및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063-860-0056)에서 열람 가능

익산시 고시 제2020-200호

용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용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61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 및 동 시행령 제82조(각종 고시 및 공고의 방법)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15.

익 산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용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 사업의 위치 : 익산시 용안면 교동리 일원
3. 사업의 목적
   가. 주민 복지 및 문화, 여가활동의 기능 강화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나. 주민복지와 더불어 주변 학생들의 문화, 교육 거점으로 기반 조성 및 지역 활성화 유도

4. 주요사업내용(변경)

구 분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비 고
		당 초	변 경	
기초생활기반	어울림센터 및 힐링마당	3,489	3,601	
지역경관개선	지역경관개선	148	8	
지역역량강화	역량강화사업 및 부대비용등	913	941	
합 계		4,550	4,550	

5. 사 업 비 : 4,550백만원(국비 3,185, 도비 607, 시비 758)

6. 사업기간 : 당초 - 2016.3 ~ 2020. 12 (5개년)

변경 - 2016.3 ~ 2021. 6 (6개년)

7. 사업시행자 : 익산시장(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일괄수탁)

8. 변경사유 : 현장실정에 따른 기능별 사업비 조정 및 사업기간 연장

※ 시행계획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농촌활력과(☎063-859-7222) 및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063-860-0059)에서 열람 가능함

익산시 고시 제2020-201호

하남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준공인가 고시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하남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및 동 시행령 제82조(각종 고시 및 공고의 방법)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15.

익 산 시 장

1. 사업의 명칭 : 하남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2. 사업의 위치 : 익산시 덕기동 일원
3. 사업의 목적 : 농촌에 대한 기초인프라 투자 및 특화된 지역개발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 도모
4. 주요 사업내용
   ‣ 지역소득증대 : 농산물 가공공장 및 설비구축
5. 사 업 비 : 402백만원(국비 230 지방비 99 자부담 73)
6. 사업기간 : 2015. 1. ~ 2018. 6.
7. 사업시행자 : 익산시장(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일괄 수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농촌활력과(☎063-859 -7222) 및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063-860-0058)에서 열람 가능함

익산시 고시 제2020-202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개간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서

사 업 시행자	성명	최상준		생년월일	530824-1******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관선1길 83-3(남노송동)			
개 간 장 소		시		면·동	리
		익산		망성	장선
개간의 용도		개전(하지감자재배)			
승 인 면 적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인가면적 (㎡)	토 지 대 가
		258-3	임	2,322	2,322	
지정착수시기		기간 - 당초 : 허가일 ~ 2020. 06. 30. **변경 : 허가일 ~ 2021. 06. 30.**				
공사비 예정액		7,817,000원				
승 인 조 건		붙임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함.

2020년 12월 일

익 산 시 장

개간사업 시행계획승인 토지표시

토지의 소재				지목	지적 (㎡)	개간 승인 면적 (㎡)	토지대가			
시	면	리	지번				㎡당	금액	주소	성명
익산	망성	장선	258-3	임	2,322	2,322				

1. 개간사업 시행승인서에는 계획평면도를 첨부함.
2. 승인을 받은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16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당하였거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즉시 승인증을 반납할 것.

< 붙임 2 >

개간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조건

본 개간사업은 『농어촌정비법』 및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규정』 등 제규정과,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농림부)』에 부합되어야 하며, 아래에 제시된 승인조건을 충실히 반영,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하여, 농업생산기반조성 목적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1. 본 승인조건을 사업시행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과정에서 시행계획서 및 세부설계서, 승인조건과 다르게 사업이 추진될 경우 승인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2. 승인 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형질변경 행위를 할 수 없음.
3. 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지역주민 등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들어 적정한 피해방지 및 민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4. 개간은 농업생산의 기반조성을 위한 산지 등을 개발하여 농지를 만드는 것으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농림부)』에 의거 절토량과 성토량을 균형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함.(과도한 절토에 의한 토사반출 금지)
5.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86호『개간사업추진에관한규정』제10조에 의거 개간농지는 5년 이내에는 개간목적을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없으며, 개간사업으로 인한 개발농지 및 인근농경지 피해에 대하여 자력복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6. 공사 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로 사전신고 대상이며, 건설장비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야간작업 지양 및 “건설공사장의 소음관리요령(환경부)” 등을 준수.시행하여야 함

7. 공사 시 토사와 지표면의 오염물질이 인근 하천 및 농수로 등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운영 등 토사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가배수로 및 배수유역별 침사지 선 시공
- 우기 시 토공사 중지 및 토사노출면에 덮개 설치 등

8. 『물환경보전법』제15조(배출 등의 금지) 규정에 따라 토사유출에 의한 주변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오염예방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함.

9. 사업시행 시 임상이 양호하고 보전가치가 있는 수목은 최대한 굴취 하여 사업부지내 이식하는 등 활용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10. 공사 시 멸종위기 또는 보호야생 동.식물의 서식이 발견 또는 확인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보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11. 사업시행 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폐유, 임목, 일반생활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정처리(재활용 포함)하여야 함.

12. 사업시행 과정에서 매장 문화재가 발견될 때에는 즉시 사업을 중단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류』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제17조(발견신고 등)의 규정에 의

거 현장을 보존하고 문화재청이나 우리시 역사문화재과 (063-859-5791)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

13. 개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개별법상의 제한사항 협의(인가.허가.승인)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절차 이행 후 시행 하여야 함.
14.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면적 증.감 내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개간사업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시행 하여야 함.
15. 개간사업 완료 후(절개지 등 복구작업 완료포함) 확정측량 성과도(등록전환 및 경계측량 등)를 첨부 후 준공검사를 신청 하여야 함.

익산시 고시 제2020-208호

장점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장점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규정에 의거 기본 및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일

익 산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장점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
2. 사업의 위치 : 익산시 함라면 신등리 738번지 일원
3. 사 업 목 적 : 함라면 장점 마을의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및 지역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4. 사 업 내 용 : 주민복지센터 1동 신축 및 주차장 조성 등
5. 사 업 비 : 1,820백만원(도비 1,100 / 시비 710)
6. 사 업 기 간 : 2019 ~ 2021(3년간)
7. 사업 시행자 : 익산시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농촌활력과(☎063-859-7223) 에서 열람 가능

익산시 고시 제2020-209호

두동편백 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두동편백 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61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 및 동 시행령 제82조(각종 고시 및 공고의 방법)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10.

익 산 시 장

1. 사업의 명칭 : 두동편백 마을만들기사업
2. 사업의 위치 : 익산시 성당면 두동리 377-1
3. 사업의 목적 : 두동편백마을의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및 지역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4. 주요사업내용(변경)

구 분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비 고
		당 초	변 경	
기초생활기반	주민복지관(신축), 작은도서관(리모델링)	792,379	780,919	
지역경관개선	마을우물정비	11,749	9,880	
지역역량강화	교육,컨설팅, 홍보 마케팅 등	193,872	207,201	
합 계		998,000	998,000	

5. 사 업 비 : 998백만원(국비 175, 도비 17.5, 시비 805)
6. 사업기간 : 당초 - 2019. 11. 16. ~ 2020. 12. 30.
변경 - 2019. 11. 16. ~ 2021. 06. 30.
7. 사업시행자 : 익산시장(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일괄수탁)
8. 변경사유 : 현장실정에 따른 기능별 사업비 조정 및 사업기간 연장

※ 시행계획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농촌활력과(☎063-859-7225) 및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063-860-0086)에서 열람 가능함

익산시 공고 제2020-2914호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조례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부적절한 용어, 어렵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입법체계를 정비

나. 조례에 담긴 정책내용을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 구현 기여

※ 법제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 사업(익산시, 15개 조례 선정)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부적절한 용어 정비) 외국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조례의 용어를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 지원

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및 입법체계 정비) 주민이 스스로 해석하기 어려운 모호한 조례의 문장과 입법기술적으로 부적절한 조례의 체계 정비를 통해 주민이 조례의 입법 의도와 조례에 담긴 정책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의 품질 제고

※ 조례의 내용 변경 없이 현행 조례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업임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참조: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4622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익산시청)
- 익산시청 위생과(전화 063-859-5454, FAX 063-859-5083)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위생과 위생관리계 이상현(063-859-545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익산시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향토음식”이란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전라북도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전라북도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향토음식 중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전승되는 고유한 음식과 지역의 농ㆍ축ㆍ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독특한 방법으로 조리한 향토색 짙은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시향토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향토음식 심의위원회)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향토음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라북도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향토음식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시향토음식 경진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4. 시향토음식 관광 상품화에 관한 사항
5. 시향토음식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향토음식의 발굴·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향토음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식품·관광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음식 관련 단체·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식품 관련 업체 대표
5.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조리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6. 대학에서 역사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7. 언론인
8.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 위원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향토음식 관련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제11조(향토음식의 발굴 및 지정신청) ① 시장은 새로운 향토음식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사업,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향토음식의 효율적인 발굴ㆍ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음식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식품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

학에 향토음식 발굴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음식을 전라북도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향토음식 지정신청을 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향토음식점의 지정)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한 업소에 향토음식점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향토음식점의 향토음식 개발·판매·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시향토음식이 향토음식으로서의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향토음식의 지정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점에서 시향토음식을 조리·제조·판매하지 않는 경우
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의 지정취소를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육성 지원 등) 시장은 시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향토음식의 발굴·육성 및 보전을 위한 사업
2. 시향토음식의 연구·조사

3. 시향토음식에 관한 교육, 홍보
4. 시향토음식 관계 기관·단체의 육성
5. 시향토음식 관련 각종 행사
6. 향토음식점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시향토음식 발굴·육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명칭사용의 금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지 않은 자는 향토음식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정 비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산업진흥법」제18조에 따라 익산시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의 발굴·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음식”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지역의 농·축·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독특한 방법으로 조리한 향토색 짙은 음식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향토음식”이란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전라북도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전라북도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향토음식 중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전승되는 고유한 음식과 지역의 농·축·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독특한 방법으로 조리한 향토색 짙은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전라북도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시향토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3. “관광 상품화”란 관광객에게 향토음식의 맛과 멋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향토음식 개발, 판매, 홍보 등의 제반사항을 말한다.	<삭 제>
제3조(향토음식 심의 위원회) 향토음식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토음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향토음식 심의위원회)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향토음식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향토음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의 평가와 경진대회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라북도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향토음식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시향토음식 경진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4. 시향토음식 관광 상품화에 관한 사항 5. 시향토음식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향토음식의 발굴ㆍ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녹지국장, 식품위생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향토음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식품·관광 관련 대학 교수	2. 식품ㆍ관광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음식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음식 관련 단체ㆍ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식품관련 업체 대표	4. 식품 관련 업체 대표
5. 요리전문가	5.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조리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6. 향토사학자	6. 대학에서 역사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7. 언론인	7. 언론인

8.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①위원은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8조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 위원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

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로 이동)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제3항에서 이동)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향토음식 관련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향토음식의 발굴 등) ① 시장은 새로운 향토음식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사업,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향토음식의 발굴 및 지정신청) ① 시장은 새로운 향토음식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사업,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식품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향토음식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향토음식의 효율적인 발굴ㆍ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음식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식품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에 향토음식 발굴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음식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지정신청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음식을 전라북도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향토음식 지정신청을 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향토음식점의 지정) ①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향토음식점의 지정)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향토음식점에 지정업소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관광상품화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한 업소에 향토음식점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향토음식점의 향토음식 개발·판매·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 지정취소 요청 및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시향토음식이 향토음식으로서의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향토음식의 지정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	1. 향토음식점에서 시향토음식을 조리·제조·판매하지 않는 경우
2. 향토음식을 조리·제조·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의 지정취소를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육성지원 등) 시장은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의 발굴·육성 및 보전을 위한 사업 2. 향토음식의 연구·조사 3. 향토음식에 관한 교육, 홍보 4. 향토음식 관계 기관·단체의 육성 5. 향토음식 관련 각종 행사 6. 향토음식점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향토음식 발굴·육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육성 지원 등) 시장은 시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향토음식의 발굴·육성 및 보전을 위한 사업 2. 시향토음식의 연구·조사 3. 시향토음식에 관한 교육, 홍보 4. 시향토음식 관계 기관·단체의 육성 5. 시향토음식 관련 각종 행사 6. 향토음식점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시향토음식 발굴·육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명칭사용의 금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향토음식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명칭사용의 금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지 않은 자는 향토음식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익산시 공고 제2020-2918호

「익산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익산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전부개정에 따른 익산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보험료 신청 및 대상자 확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보험료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0. 12. 3. ~ 2020. 12. 23.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4622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60번지) 익산시청 복지정책과

○ 전　화 : 063-859-5397

○ F A X : 063-859-5074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팩스, 직접 방문, 컴퓨터 통신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복지정책과 담당자에게 전화(859-5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익산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익산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익산시 규칙 제 호

익산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익산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익산시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익산시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신청서 제출) ①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보험료 신청)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장(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은 지원 대상자 명부를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자 변동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대상자 확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대상자 및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세대는 각종 공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로 확정한다.

제5조(보험료 지급) ① 시장은 확정된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

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보험료 납부 만기일 이내에 일괄 지급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정 계좌에 일괄 입금된 보험료를 개인별 수납처리하고 보험료 조정 등으로 인한 잔여 보험료에 대하여 월별로 정산한다.

제6조(대상자 관리) 시장은 지원 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제2조 제1항 관련)

구분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기타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세대주와 관 계		연락처	집전화: 핸드폰: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거 여부	건강상태	학 력	직 업
가 족							

소득 재산 현황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원)□ 임시.일용근로자(원)
	재산소득	□ 임대소득 (원)□ 이자소득 (원)
	기타소득	□ 사적이전소득(원)□ 공적이전소득 (원)
	건 축 물	□ 주택(원)□ 건물(원)□기타(원)
	토 지	□ 논(원) □ 밭 (원)□기타(원)
	금융.차량	□ 은행예금,적금 (원) □ 차량 :
국민건강보험료		원(가장 최근 납부 보험료 기준)

「익산시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제3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기존 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인/서명)

익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리대장(제6조 관련)

연 번	대 상 자				지원구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단위:원)	비 고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남/여			

익산시 공고 제2020-2972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의제 감사기구의 도입 및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조직 신설과 하위직공무원의 사기진작, 조직운영 효율성 도모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정원 책정기준 범위 내에서 기능·인력 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관별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 별표 1)

1) 총 정 원	:	1,573	→	1,591(+18)
2) 본 청	:	817	→	809(△8)
3) 의 회	:	24	→	25(+1)
4) 보 건 소	:	123	→	125(+2)

5) 사 업 소 : 163 → 169(+6)

6) 합의제행정기관 : 신설 17(+17)

나. 일반직 5급 기관별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 별표 1)

1) 총 계 : 82 → 83(+1)

2) 본 청 : 38 → 37(△1)

3) 사 업 소 : 8 → 9(+1)

4) 합의제행정기관 : 신설 1(+1)

다. 일반직 6급 기관별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 별표 1)

1) 총 계 : 347 → 351(+4)

2) 본 청 : 188 → 184(△4)

3) 의 회 : 5 → 6(+1)

4) 사 업 소 : 35 → 38(+3)

5) 합의제행정기관 : 신설 4(+4)

라. 일반직 7급 기관별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 별표 1)

1) 총 계 : 410 → 419(+9)

2) 본 청 : 233 → 232(△1)

3) 보 건 소 : 27 → 28(+1)

4) 사 업 소 : 46 → 45(△1)

5) 합의제행정기관 : 신설 10(+10)

마. 일반직 8급 기관별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 별표 1)

1) 총 계 : 317 → 330(+13)

2) 본 청 : 163 → 173(+10)

3) 보 건 소 : 54 → 55(+1)

4) 합의제행정기관 : 신설 2(+2)

바. 일반직 9급 기관별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 별표 1)

1) 총 계 : 348 → 339(△9)

2) 본 청 : 177 → 165(△12)

3) 사 업 소 : 30 → 33(+3)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익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우)56422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2) 익산시청 행정지원과

(전화 063-859-5732, 팩스 063-859-505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행정지원과 조직관리담당자에게 전화(☎063-859-5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규칙 제 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제2조 관련)

직급·직렬별 \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	읍	면	동
합 계		1,591(24)	809(20)	25	125	46	169	10	17	15	180(1)	195(3)
정무직 계		1	1									
정무	**소 계**	**1**	**1**									
	지방정무	1	1									
일반직 계		1,536(24)	799(20)	25	125	5	165	10	17	15	180(1)	195(3)
3급	**소 계**	**1**	**1**									
	행 정	1	1									
4급	**소 계**	**9**	**6**	**1**	**1**		**1**					
	기 술	1			1							
	행정·기술	8	6	1			1					
5급	**소 계**	**83**	**37**	**3**	**3**		**9**	**1**	**1**	**1**	**14**	**14**
	행 정	4	3				1					
	행정·사회복지	5	4									1
	행정·사서	2					2					
	행정·공업	2					2					
	행정·보건											
	행정·시설	14	12					1	1			
	행정·별정	2		2								
	행정·사회복지·공업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2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6										6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공업·시설	4	3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시설	4	1								3	
	행정·녹지·시설	3	3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환경·시설	2	1								1	
	행정·시설·별정	1		1								
	행정·방송통신·사서	1	1									
	보건·의무·간호											
	행정·사회복지·공업·농업											
	행정·사회복지·공업·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수의	1									1	
	행정·사회복지·농업·환경	2									2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4								1	2	1
	행정·사회복지·녹지·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	3										3
	행정·공업·농업·시설	1	1									
	행정·공업·녹지·시설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4	1				2				1	
	행정·농업·녹지·시설	3	1								2	

직급·직렬별 \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	읍	면	동
	행정·농업·환경·시설	1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1									
	행정·보건·보건진료·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2			2							
6급	소 계	351	184	6	29		38	3	4	4	52	31
	행 정	27	19	5			3					
	세 무	6	6									
	전 산	1	1									
	사회복지	7	4									3
	사 서	1					1					
	공 업	6	3				3					
	농 업	2	2									
	보 건	3			3							
	의료기술											
	보건진료	6			6							
	식품위생	1	1									
	환 경	2	1				1					
	시 설	27	22				3	1	1			
	시설관리	1	1									
	운 전	3	3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2					1	1				
	행정·세무	8	7				1					
	행정·전산	6	4				1				1	
	행정·사회복지	44	11								5	28
	행정·사서	5					5					
	행정·공업	21	11				9		1			
	행정·농업	25	11							1	13	
	행정·녹지	4	4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34	29				2	1	2			
	행정·별정	1		1								
	전산·방송통신	1	1									
	공업·보건	1	1									
	공업·환경	7	6				1					
	공업·시설	2	1				1					
	농업·수의	1	1									
	농업·시설	1	1									

직급·직렬별 \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	읍	면	동
	녹지·시설	1	1									
	행정·세무·농업	14								1	13	
	행정·전산·사서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공업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7	1							1	5	
	행정·사회복지·의료기술	4									4	
	행정·사회복지·간호											
	행정·사회복지·시설	3	3									
	행정·공업·농업	3	1								2	
	행정·공업·환경	5	4								1	
	행정·공업·시설	7	5				2					
	행정·공업·학예	1					1					
	행정·농업·녹지	3									3	
	행정·농업·환경	3	1								2	
	행정·농업·시설	8	5							1	2	
	행정·녹지·시설	3	2				1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행정·보건·의료기술	1			1							
	행정·보건·간호	2	1		1							
	행정·시설·학예	2	1				1					
	녹지·환경·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8			18							
	행정·전산·공업·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7급	소 계	419(2)	232(2)	6	28	1	45	4	10	5	37	51
	행 정	146(2)	77(2)	6			11	1	8	1	10	32
	세 무	22	14							1	2	5
	전 산	3	3									
	사회복지	40	17							1	10	12
	사 서	4					4					
	공 업	18	12				6					
	농 업	4	3			1						
	녹 지	5	5									
	수 의											
	보 건	10	2		8							
	의료기술	3			3							
	간 호	6			6							
	보건진료	8			8							
	환 경	2	2									
	시 설	46	37				5	2	2			
	방송통신	4	4									
	시설관리	9	2				4				2	1
	운 전	4	3		1							
	전기운영	4	2				2					
	기계운영	8	4				4					

	열관리운영	1					1					
	사무운영	8	7							1		
	행정·세무	1	1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사서	2					1					1
	행정·공업	4	4									
	행정·농업	20	8							1	1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1						1				
	행정·간호	2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10	7				3					
	공업·환경	3	3									
	공업·시설	5	1				4					
	농업·수의	6	6									
	행정·농업·녹지	2									2	
	행정·농업·보건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8급	**소 계**	**330(4)**	**173(4)**	**4**	**55**	**1**	**37**	**2**	**2**	**2**	**23**	**31**
	행 정	63(4)	46(4)	3			2			1	3	8
	세 무	21	13								3	5
	전 산	2	2									
	사회복지	25	9								5	11
	사 서	3					3					
	공 업	9	2			1	5		1			
	농 업	2	2									
	녹 지	2	2									
	보 건	6	4		2							
	의료기술	8			8							
	간 호	13			12		1					
	보건진료	10			10							
	환 경	4	4									
	시 설	37	30	1			4	2				
	방송통신	1	1									
	방재안전	1	1									
	시설관리	1										1
	운 전	4	4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6	3				3					
	기계운영	11	2				9					
	화공운영	1	1									
	사무운영	9	6						1		2	
	행정·전산	7	6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사서	2					2					
	행정·공업	2	2									
	행정·농업	24	9							1	8	6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9	7				2					
	행정·방재안전	1	1									
	공업·보건	2					2					
	공업·환경	5	4				1					
	농업·해양수산	1	1									
	녹지·시설	1	1									
	보건·의료기술	7			7							
	보건·간호	14	1		13							
	환경·시설	1	1									
	행정·공업·시설	3	1				2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시설·학예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3			3							
9급	소 계	339(18)	165(14)	5	9	2	33			3	54(1)	68(3)
	행 정	69(18)	44(14)				4				9(1)	12(3)
	세 무	8	3								2	3
	전 산	1	1									
	사 서	4					4					
	사회복지	85	21							3	26	35
	공 업	10	4			2	4					
	농 업	7									7	
	녹 지	2	2									
	보 건	8	5		2		1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1			1							
	환 경	9	7				2					
	시 설	36	33				3					
	방송통신	1		1								
	방재안전											
	시설관리	11	3				4				2	2
	운 전	6	2	1	2		1					
	전기운영	6	3	1			2					
	사무운영	15	3	2	1						1	8
	행정·세무	5	3								1	1
	행정·전산	3	2				1					
	행정·사회복지	19	6								6	7
	행정·사서	4					4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5	5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3	1		2							
	행정·환경	3	3									

	행정·시설	3	3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학예	3	1				2					
	공업·환경	3	2				1					
	농업·시설	3	3									
	보건·의료기술	1			1							
전문경력관 계		**4**	**1**			**1**	**2**					
나군	소 계	4	1			1	2					
	위생감시원	1	1									
	문화재관리전문요원	1					1					
	농기계교관요원	1				1						
	무대공연관리요원	1					1					
연구직 계		**9**	**3**			**2**	**4**					
연구사	**소 계**	**9**	**3**			**2**	**4**					
	환경연구	2					2					
	학예연구	4	2				2					
	기록연구	1	1									
	농업연구	1				1						
	농업·수의연구	1				1						
지도직 계		**40**	**1**			**39**						
지도관	**소 계**	**3**				**3**						
	농촌지도	3				3						
지도사	**소 계**	**37**	**1**			**36**						
	농촌지도	37	1			36						
별정직 계		**5**	**5**									
6급	소 계	1	1									
	비서요원	1	1									
7급	소 계	1	1									
	비서요원	1	1									
8급	소 계	2	2									
	비서요원	2	2									
9급	소 계	1	1									
	비서요원	1	1									

※ 괄호( )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1]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급·직렬별 \ 기관별		합계	본청	의회	보건소	---	사업소	---	<신설>	읍	면	---
합 계		1,573 (24)	817 (20)	24	123		163		<신설>	15	180 (1)	

일반직 계		1,518 (24)	807 (20)	24	123		159		<신설>	15	180 (1)	
5급	소 계	82	38	3	3		8		<신설>	1	14	

	행정·사서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13	12						<신설>			

	행정·농업·시설	5	2								3	

	<신설>	<신설>	<신설>									

	보건·의무·간호	1			1							

개 정 안

[별표 1]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급·직렬별 \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	사업소	---	합의제 행정 기관	읍	면	---
합 계		1,591 (24)	809 (20)	25	125		169		17	15	180 (1)	
									—			
일반직 계		1,536 (24)	799 (20)	25	125		165		17	15	180 (1)	
5급	소 계	83	37	3	3		9		1	1	14	

	행정·사서	2					2		—			
	<삭제>	<삭제>	<삭제>						—			
	행정·시설	14	12						1			

	행정·농업·시설	4	1								3	

	행정·보건·간호	1	1									

	<삭제>	<삭제>			<삭제>							

직급·직렬별 \ 기관별		합계	본청	의회	보건소	---	사업소	---	<신설>	읍	면	---
	행정·사회복지·공업·농업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3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신설>	<신설>			<신설>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6급	소 계	347	188	5	29		35		<신설>	4	52	
	행 정	26	20	4			2					

	의료기술	1			1							

	시 설	26	22				3		<신설>			

	행정·사회복지	45	11								6	
	행정·사서	4					4					
	행정·공업	20	12				8		<신설>			

	행정·시설	34	31				2		<신설>			

직급·직렬별 \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	사업소	---	합의제 행정 기관	읍	면	---
	<삭제>	<삭제>									<삭제>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4								1	2	

	<삭제>	<삭제>			<삭제>							
	행정·보건·보건진료·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2			2							
6급	소 계	351	184	6	29		38		4	4	52	
	행 정	27	19	5			3					

	<삭제>	<삭제>			<삭제>							

	시 설	27	22				3		1			

	행정·사회복지	44	11								5	
	행정·사서	5					5					
	행정·공업	21	11				9		1			

	행정·시설	34	29				2		2			

직급·직렬별 \ 기관별		합계	본청	의회	보건소	---	사업소	---	<신설>	읍	면	---
	행정·사회복지·보건	5	1							<신설>	4	

	행정·사회복지·간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7			17							

7급	소 계	410(2)	233(2)	6	27		46		<신설>	5	37	
	행 정	146(2)	84(2)	6			12		<신설>	1	10	

	전 산	2	2									
	사회복지	34	11							1	10	

	녹 지	4	4									
	수 의	1	1									

	간 호	5			5							

	환 경	1	1									
	시 설	46	39				5		<신설>			

	사무운영	9	8							1		

직급·직렬별 \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	사업소	---	합의제 행정 기관	읍	면	---
	행정·사회복지·보건	7	1							1	5	

	<삭제>	<삭제>								<삭제>		

	보건·의료기술·간호	18			18							

7급	소 계	419(2)	232(2)	6	28		45		10	5	37	
	행 정	146(2)	77(2)	6			11		8	1	10	

	전 산	3	3									
	사회복지	40	17							1	10	

	녹 지	5	5									
	<삭제>	<삭제>	<삭제>									

	간 호	6			6							

	환 경	2	2									
	시 설	46	37				5		2			

직급·직렬별 \ 기관별		합계	본청	의회	보건소	---	사업소	---	<신설>	읍	면	---

	농업·수의	5	5									

8급	소 계	317(4)	163(4)	4	54		37		<신설>	2	23	
	행 정	53(4)	36(4)	3			2			1	3	
	---										3	
	전 산	3	3									

	공 업	9	3				5		<신설>			
	농 업	1	1									

	보 건	9	4		5							

	간 호	12			11		1					

	<신설>	<신설>	<신설>									

	운 전	3	3									

	사무운영	9	7						<신설>		2	

직급·직렬별 \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	사업소	---	합의제 행정 기관	읍	면	---
	사무운영	8	7							1		

	농업·수의	6	6									

8급	소 계	330(4)	173(4)	4	55		37		2	2	23	
	행 정	63(4)	46(4)	3			2			1	3	
	---										3	
	전 산	2	2									

	공 업	9	2				5		1			
	농 업	2	2									

	보 건	6	4		2							

	간 호	13			12		1					

	방재안전	1	1									

	운 전	4	4									

	사무운영	9	6						1		2	

직급·직렬별 \ 기관별		합계	본청	의회	보건소	---	사업소	---	<신설>	읍	면	---
	<신설>	<신설>			<신설>							
9급	소 계	348(18)	177(14)	5	9		30			3	54(1)	
	행 정	73(18)	49(14)				3				9(1)	
	세 무	10	5								2	
	전 산	2	2									
	사 서	6					6					
	사회복지	96	32							3	26	
	공 업	8	4				2					
	농 업	12	5								7	
	녹 지	3	3									
	보 건	7	5		2		<신설>					

	환 경	14	12				2					

	방송통신	2	1	1								
	방재안전	1	1									

	운 전	7	3	1	2		1					
	전기운영	6	2	1			3					

	행정·세무	3	1								1	

직급·직렬별 \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	사업소	---	합의제 행정 기관	읍	면	---

	보건·의료기술 ·간호	3			3							
9급	소 계	339(18)	165(14)	5	9		33			3	54(1)	
	행 정	69(18)	44(14)				4				9(1)	
	세 무	8	3								2	
	전 산	1	1									
	사 서	4					4					
	사회복지	85	21							3	26	
	공 업	10	4				4					
	농 업	7									7	
	녹 지	2	2									
	보 건	8	5		2		1					

	환 경	9	7				2					

	방송통신	1	<삭제>	1								
	<삭제>	<삭제>	<삭제>									

	운 전	6	2	1	2		1					
	전기운영	6	3	1			2					

기관별 /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보건소	---	사업소	---	<신설>	읍	면	---
행정·전산	2	1				1					
행정·사회복지	14	1								6	
행정·사서	2					2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3	1		2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2	2									
<신설>	<신설>	<신설>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학예	3	1				2					
공업·환경	1	<신설>				1					
농업·시설	1	1									

기관별 / 직급·직렬별	합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	사업소	---	합의제 행정 기관	읍	면	---
행정·세무	5	3								1	
행정·전산	3	2				1					
행정·사회복지	19	6								6	
행정·사서	4					4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5	5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3	1		2							
행정·환경	3	3									
행정·시설	3	3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학예	3	1				2					
공업·환경	3	2				1					
농업·시설	3	3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익산시 공고 제2020-2973호

「익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사항 반영, 합의제행정기구 신설에 따른 전결권 조정 필요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사항 반영.(안 별표 1)

- 투자유치과 → 신성장동력과 부서명칭 변경
- 도시경관디자인 조성(도시재생과) → 도시개발과 이관
- 시립도서관 → 모현시립도서관 / 영등시립도서관 분리

나. 감사위원회 전결사항 신설.(안 별표 2)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익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우)54622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2) 익산시청 행정지원과

(전화 063-859-5732, 팩스 063-859-505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행정지원과 조직관리담당자에게 전화(☎063-859-5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규칙 제 호

익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익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별표 1과 같이 하고”를 “별표 1, 합의제행정기관의 사무전결 처리사항은 별표 2”로,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1”을 “제1항의 사무전결 처리사항”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별표 3”을 “별표 4”로 한다.

별표 1 감사담당관란을 삭제한다.

별표 1 소관부서명 “투자유치과”를 “신성장동력과”로 변경한다.

별표 1 도시재생과 소관 단위업무 제4호를 삭제하고, 도시개발과란에 단위업무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부서	단위업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담당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시장	
도 시 개발과	9. 도시경관 디자인 조성	1. 익산시 경관계획 수립		기안			○	
		2.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기안			○		
		3. 경관 자문 및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4. 경관 협의	기안		○			
		5.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기안			○	
		6. 공공디자인 자문 및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7. 공공디자인 협의	기안		○			

별표 1 교통행정과란을 삭제하고 도로과란 다음에 종전의 교통행정과란을 신설한다.

별표 1 시립도서관란을 삭제하고 왕도역사관란 다음에 “모현시립도서관”란 및 “영등시립도서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부서	단위업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장결재
			담당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시장	
모현시립도서관	1. 도서관 운영	1. 입찰집행		기안		○		
		2. 자료 확보 계획		기안		○		
		3.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4. 도서관시설 사용허가	기안		○			
		5. 도서관시설관리 및 물품조달	기안			○		
		6. 강사료지출	기안		○			
		7. 주요시책의 기획조정(주요업무계획)		기안			○	
		8. 예산집행 상황보고	기안		○			
		9.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수불	기안		○			
		10. 일상경비출납	기안		○			
		11. 세출계산서 및 증빙서	기안		○			
		12. 도서관이용 홍보	기안		○			
		13. 자료구입	기안		○			
		14. 강사위촉	기안		○			
		15. 자료열람 및 대출	기안		○			
		16. 상호대차서비스 운영	기안		○			
		17. 자료의 불용 결정 및 폐기		기안	○			
		18. 신규사업 계획 수립		기안			○	
		19. 작은도서관 신고 및 지원	기안			○		
		20.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지원		기안			○	
영등시립도서관	1. 도서관 운영	1. 입찰집행		기안		○		
		2. 자료 확보 계획		기안		○		
		3. 도서관시설 사용허가	기안		○			
		4. 도서관시설관리 및 물품조달	기안			○		
		5. 강사료지출	기안		○			
		6. 주요시책의 기획조정(주요업무계획)		기안			○	
		7. 예산집행 상황보고	기안		○			
		8.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수불	기안		○			
		9. 일상경비출납	기안		○			
		10. 세출계산서 및 증빙서	기안		○			
		11. 도서관이용 홍보	기안		○			
		12. 자료구입	기안		○			
		13. 강사위촉	기안		○			
		14. 자료열람 및 대출	기안		○			
		15. 열람시간 조정		기안		○		
		16. 자료의 불용 결정 및 폐기		기안	○			
		17. 신규사업 계획 수립		기안			○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익산시 사무전결 처리사항(합의제행정기관)

소관부서	단위업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위원장
			담당자	계장	
감사위원회	1. 상급기관 감사 수감	1. 상급기관 수감자료 작성	기안		○
감사위원회		2. 감사 결과 보고 및 처분지시		기안	○
감사위원회		3.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기안		○
감사위원회		4. 감사동향파악	기안		○
감사위원회	2. 자체감사	1. 자체감사 계획수립		기안	○
감사위원회		2. 자체 감사결과 보고	기안		○
감사위원회		3. 감사결과 처분지시	기안		○
감사위원회	3. 공무원 징계	1.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감사위원회		가. 6급 이하 중징계 및 5급 이상 징계		기안	○
감사위원회		나. 6급 이하 경징계 및 훈계(경고) 처분		기안	○
감사위원회		2. 이의신청에 관한사항	기안		○
감사위원회		3. 소청에 관한 사항	기안		○
감사위원회	4. 공무원 비위조사 및 예방	1. 국가기강 확립추진		기안	○
감사위원회		2. 특별 및 특명감사		기안	○
감사위원회		3. 공무원 비위예방대책 추진	기안		○
감사위원회		4. 공직기강 확립(기강감사)	기안		○
감사위원회		5. 비위공무원 조사		기안	○
감사위원회		6. 공무원범죄 수사 및 처분통보사항 처리		기안	○
감사위원회		7. 부패방지업무추진	기안		○
감사위원회	5. 사무인계 인수검사 등	1. 사무인수인계 검사	기안		○
감사위원회		2. 월별 지출계산서 및 분기별 세입 징수액 계산서 검사	기안		○
감사위원회		3. 기타 각종 월보 및 분기보고	기안		○
감사위원회		4. 감사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감사위원회	6. 일상감사	1. 일상감사	기안		○
감사위원회		2. 일상감사 결과 조치지시	기안		○
감사위원회	7.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1. 공직자윤리위원 및 간사 위촉(임명)·해촉		기안	○

소관부서	단위업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위원장
			담당자	계장	
감사위원회		2.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기안		○
감사위원회	8. 공직자재산 등록	1. 재산등록신고서 접수 및 열람복사 허가	기안		○
감사위원회		2. 재산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	기안		○
감사위원회		3. 공직자윤리위원회 통보	기안		○
감사위원회		4. 심사결과 불성실자 처분	기안		○
감사위원회	9. 설계자문 및 심의위원회 운영	1. 설계자문 및 심의위원회 회의 계획수립	기안		○
감사위원회		2. 설계자문 및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기안		○
감사위원회		3. 설계자문 및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통보	기안		○
감사위원회	10. 직소민원	1. 고질진정민원·탄원사항	기안		○
감사위원회		2. 다수인관련 민원처리상황 확인분석 및 사후관리	기안		○
감사위원회		3.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집단민원 해소대책	기안		○
감사위원회		4. 홈페이지 민원, 건의사항 처리	기안		○
감사위원회		5.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선정·위(해)촉	기안		○
감사위원회		6. 시민고충처리원회 회의개최	기안		○
감사위원회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접수 및 조서	기안		○
감사위원회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결과통지	기안		○
감사위원회		9. 기타 위원회 운영 일반	기안		○
감사위원회	11. 120 생활민원	1. 120생활민원운영 계획수립	기안		○
감사위원회		2. 120생활민원신고 접수 및 관련부서이첩	기안		○
감사위원회		3. 120생활민원 신고사항 이행여부 확인 및 관리	기안		○
감사위원회	12. 민원콜센터 운영	1. 민원콜센터 기본(운영)계획 수립		기안	○
감사위원회		2. 민원콜센터 시스템 및 홈페이지 관리	기안		○
감사위원회		3. 민원콜센터 상담자료(DB) 및 프로그램 관리	기안		○
감사위원회		4. 민원콜센터 운영 결과 분석 및 반영	기안		○
감사위원회		5. 민원콜센터 청사 관리	기안		○

소관부서	단위업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위원장
			담당자	계장	
감사위원회		6. 민원콜센터 위·수탁 계약		기안	○
감사위원회		7. 민원콜센터 위·수탁 운영관리	기안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1]

익산시 사무전결 처리사항(제4조제1항 관련)

소관 부서	단위업무	세부사무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	---	---						
감사담당관	---	---						
---	---	---						
투자유치과	---	---						
도시재생과	4. 도시경관디자인 조성	1. 익산시 경관계획 수립		기안			○	
		2.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기안			○		
		3. 경관 자문 및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4. 경관 협의	기안		○			
		5.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기안			○	
		6. 공공디자인 자문 및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7. 공공디자인 협의	기안		○			

개 정 안

[별표 1]

익산시 사무전결 처리사항(제4조제1항 관련)

소관 부서	단위업무	세부사무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	---	---						
<삭제>								
---	---	---						
신성장동력과	---	---						
도시개발과	9. 도시경관디자인 조성	1. 익산시 경관계획 수립		기안			○	
		2.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기안			○		
		3. 경관 자문 및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4. 경관 협의	기안		○			
		5.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기안			○	
		6. 공공디자인 자문 및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7. 공공디자인 협의	기안		○			

현 행

[별표 1]

익산시 사무전결 처리사항(제4조제1항 관련)

소관 부서	단위업무	세부사무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	---	---						
시립도서관								
<신설>								

개 정 안

[별표 1]

익산시 사무전결 처리사항(제4조제1항 관련)

소관 부서	단위업무	세부사무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	---	---						
<삭제>								
모현시립 도서관	1. 도서관 운영	1. 입찰집행		기안		○		
		2. 자료 확보 계획		기안		○		
		3.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4. 도서관시설 사용허가	기안		○			
		5. 도서관시설관리 및 물품조달	기안			○		
		6. 강사료지출	기안		○			
		7. 주요시책의 기획조정(주요업무계획)		기안			○	
		8. 예산집행 상황보고	기안		○			
		9.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수불	기안		○			
		10. 일상경비출납	기안		○			
		11. 세출계산서 및 증빙서	기안		○			
		12. 도서관이용 홍보	기안		○			
		13. 자료구입	기안		○			

현 행

[별표 1]

익산시 사무전결 처리사항(제4조제1항 관련)

소관 부서	단위업무	세부사무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신설>								

개 정 안

[별표 1]

익산시 사무전결 처리사항(제4조제1항 관련)

소관 부서	단위업무	세부사무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14. 강사위촉	기안		○			
		15. 자료열람 및 대출	기안		○			
		16. 상호대차서비스 운영	기안		○			
		17. 자료의 불용 결정 및 폐기		기안	○			
		18. 신규사업 계획 수립		기안			○	
		19. 작은도서관 신고 및 지원	기안			○		
		20.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지원		기안			○	
영등시립 도서관	1. 도서관 운영	1. 입찰집행		기안		○		
		2. 자료 확보 계획		기안		○		
		3. 도서관시설 사용허가	기안		○			
		4. 도서관시설관리 및 물품조달	기안			○		
		5. 강사료지출	기안		○			
		6. 주요시책의 기획조정(주요업무계획)		기안			○	
		7. 예산집행 상황보고	기안		○			
		8.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수불	기안		○			

현 행

[별표 1]

익산시 사무전결 처리사항(제4조제1항 관련)

소관 부서	단위업무	세부사무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개 정 안

[별표 1]

익산시 사무전결 처리사항(제4조제1항 관련)

소관 부서	단위업무	세부사무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9. 일상경비출납	기안		○			
		10. 세출계산서 및 증빙서	기안		○			
		11. 도서관이용 홍보	기안		○			
		12. 자료구입	기안		○			
		13. 강사위촉	기안		○			
		14. 자료열람 및 대출	기안		○			
		15. 열람시간 조정		기안		○		
		16. 자료의 불용 결정 및 폐기		기안	○			
		17. 신규사업 계획 수립		기안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 2]
<신 설>	

익산시 사무전결 처리사항(합의제행정기관)

소관부서	단위업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위원장
			담당자	계장	
감사위원회	1. 상급기관 감사 수감	1. 상급기관 수감자료 작성	기안		○
감사위원회		2. 감사 결과 보고 및 처분지시		기안	○
감사위원회		3.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기안		○
감사위원회		4. 감사동향파악	기안		○
감사위원회	2. 자체감사	1. 자체감사 계획수립		기안	○
감사위원회		2. 자체 감사결과 보고	기안		○
감사위원회		3. 감사결과 처분지시	기안		○
감사위원회	3. 공무원 징계	1.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감사위원회		가. 6급 이하 중징계 및 5급 이상 징계		기안	○
감사위원회		나. 6급 이하 경징계 및 훈계(경고) 처분		기안	○
감사위원회		2. 이의신청에 관한사항	기안		○
감사위원회		3. 소청에 관한 사항	기안		○
감사위원회	4. 공무원 비위조사 및 예방	1. 국가기강 확립추진		기안	○
감사위원회		2. 특별 및 특명감사		기안	○
감사위원회		3. 공무원 비위예방대책 추진	기안		○
감사위원회		4. 공직기강 확립(기강감사)	기안		○
감사위원회		5. 비위공무원 조사		기안	○
감사위원회		6. 공무원범죄 수사 및 처분통보사항 처리		기안	○
감사위원회		7. 부패방지업무추진	기안		○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익산시 사무전결 처리사항(합의제행정기관)

소관부서	단위업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위원장
			담당자	계장	
감사위원회	5. 사무인계 인수검사 등	1. 사무인수인계 검사	기안		○
감사위원회		2. 월별 지출계산서 및 분기별 세입 징수액 계산서 검사	기안		○
감사위원회		3. 기타 각종 월보 및 분기보고	기안		○
감사위원회		4. 감사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감사위원회	6. 일상감사	1. 일상감사	기안		○
감사위원회		2. 일상감사 결과 조치지시	기안		○
감사위원회	7.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1. 공직자윤리위원 및 간사 위촉(임명)·해촉		기안	○
감사위원회		2.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기안		○
감사위원회	8. 공직자 재산 등록	1. 재산등록신고서 접수 및 열람복사 허가	기안		○
감사위원회		2. 재산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	기안		○
감사위원회		3. 공직자윤리위원회 통보	기안		○
감사위원회		4. 심사결과 불성실자 처분	기안		○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익산시 사무전결 처리사항(합의제행정기관)

소관부서	단위업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위원장
			담당자	계장	
감사위원회	9. 설계자문 및 심의위원회 운영	1. 설계자문 및 심의위원회 회의 계획수립	기안		○
감사위원회		2. 설계자문 및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기안		○
감사위원회		3. 설계자문 및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통보	기안		○
감사위원회	10. 직소민원	1. 고질진정민원·탄원사항	기안		○
감사위원회		2. 다수인관련 민원처리상황 확인분석 및 사후관리	기안		○
감사위원회		3.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집단민원 해소대책	기안		○
감사위원회		4. 홈페이지 민원, 건의사항 처리	기안		○
감사위원회		5.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선정·위(해)촉	기안		○
감사위원회		6. 시민고충처리원회 회의개최	기안		○
감사위원회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접수 및 조서	기안		○
감사위원회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결과통지	기안		○
감사위원회		9. 기타 위원회 운영 일반	기안		○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별표 3]	[별표 2] 익산시 사무전결 처리사항(합의제행정기관) [별표 3] [별표 4]

소관부서	단위업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위원장
			담당자	계장	
감사위원회	11. 120 생활민원	1. 120생활민원운영 계획수립	기안		○
감사위원회		2. 120생활민원신고 접수 및 관련부서이첩	기안		○
감사위원회		3. 120생활민원 신고사항 이행여부 확인 및 관리	기안		○
감사위원회	12. 민원콜센터 운영	1. 민원콜센터 기본(운영)계획 수립		기안	○
감사위원회		2. 민원콜센터 시스템 및 홈페이지 관리	기안		○
감사위원회		3. 민원콜센터 상담자료(DB) 및 프로그램 관리	기안		○
감사위원회		4. 민원콜센터 운영 결과 분석 및 반영	기안		○
감사위원회		5. 민원콜센터 청사 관리	기안		○
감사위원회		6. 민원콜센터 위·수탁 계약		기안	○
감사위원회		7. 민원콜센터 위·수탁 운영관리	기안		○

관 계 법 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익산시 공고 제2020-2974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의제 감사기구 신설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 반영 및 사무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유 형 별	기 구 변 동 내 역
부 서 이 관	◆ 교통행정과 : 환경안전국 → 건설국
부서명칭 변경	◆ 투자유치과 → 신성장동력과
부 서 분 리	◆ 시립도서관 → 모현시립도서관 / 영등시립도서관
부 서 폐 지	◆ 감사담당관
합의제행정기관 신 설	◆ 감사위원회

가.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 및 변경(안 제3조, 별표 1, 별표 5)

나. 보건소 과장의 직급 규정(안 제15조)

다. 사업소·출장소의 단(소)장의 직급 규정(안 제18조, 별표 6)

라. 읍·면·동장의 직급 규정(안 제19조, 별표 7)

마. 합의제 행정기관 감사위원장의 직급 규정(안 제20조)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익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우)54622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2) 익산시청 행정지원과

(전화 063-859-5732, 팩스 063-859-505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행정지원과 조직관리담당자에게 전화(☎063-859-5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규칙 제 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 및 하부행정기관”을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합의제행정기관”으로, “과장ㆍ담당관의 사무분장”을 “과장ㆍ담당관,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분장”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합의제행정기관인 익산시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위원회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중 “분장사무는”을 “분장사무 및 감사위원장의 분장사무는”으로, “별표 4”를 “별표 5”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9조 앞에 “제2절 국”을 삭제한다.

제15조 앞에 “제3장 직속기관”을 삭제한다.

제15조 앞에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를 삭제한다.

제17조 앞에 “제2절 농업기술센터”를 삭제한다.

제19조 앞에 “제4장 사업소 및 출장소”를 삭제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며,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하고,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7조로 하며, 제19조를 제18조로 한다.

제8조 앞에 “제2절 국”을 삽입한다.

제9조(종전의 제10조) 중 “투자유치과장、문화관광산업과장、역사문화재과장、체육진흥과장”을 “신성장동력과장、문화관광산업과장、역사문화재과장、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3조) 중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을 “위생과장”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4조) 중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를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14조 앞에 “제3장 직속기관”을 삽입한다.

제14조 앞에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를 삽입한다.

제15조(종전의 제16조)제2항 중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건사업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무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건사업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한다.

제16조 앞에 “제2절 농업기술센터”를 삽입한다.

제18조 앞에 “제4장 사업소 및 출장소”를 삽입한다.

제18조(종전의 제19조) 중 “별표 5와”를 “별표 6과”로 한다.

제20조 앞에 “제5장 하부행정기관”을 삭제한다.

제19조 앞에 “제5장 하부행정기관”을 삽입한다.

제6장에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감사위원회) ① 익산시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하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 따라 개방형직위로 임용해야 하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

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1조에 따라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20조를 제19조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20조) 중 “별표 6”을 “별표 7”로 한다.

제6장(제20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합의제 행정기관

제20조(감사위원회) ① 익산시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하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 따라 개방형직위로 임용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1조에 따라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별표 1 감사담당관란 분장사무를 삭제하고, 소관부서명 “투자유치과”를 “신성장동력과”로 변경한다.

별표 1 교통행정과란을 삭제하고 도로과란 다음에 종전의 교통행정과란을 신설한다.

별표 1 도시재생과란 분장사무 제20호부터 제30호까지 삭제하고, 도시개발과란에 분장사무 제46호부터 제56호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시개발과	46. 도시경관계획 수립 47. 경관가이드라인 제정 및 운영 48. 경관가이드라인에 의한 협의 49. 경관위원회 및 경관관련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50. 경관지구, 미관지구 건축물 자문.협의 51. 경관협정 지원 및 경관사업 추진 52.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운영 53.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ㆍ운영 54.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한 자문.협의 55. 공공디자인 마인드 교육 56. 셉테드 생활안전 환경디자인사업 추진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시립도서관란을 삭제하고, 왕도역사관란 다음에 “모현시립도서관”란 및 “영등시립도서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모현시립도서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영등시립도서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별표 7 오산면행정복지센터란 직급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익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② 익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 중 환경안전분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안전분과	환경안전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계장
건 설 분 과	건설국, 상하수도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개발과 도시행정계장

[별표 5]

사무분장사항(합의제행정기관)

기관명	분 장 사 무
감사위원회	1. 자체 행정감사 실시 및 처리 2. 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지시사항 처리 3.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4.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5.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업무 6. 특별감사 및 특명감사 7. 감사동향 관리 8. 국가기강 확립 추진 9. 기강 감사(직무감찰) 10. 공무원 비위조사 및 예방 11. 공무원 범죄수사 및 처분결과 통보사항 처리 12. 일상감사(설계 적정성, 설계변경, 원가심사) 13. 정책감사 14. 건설현장 점검 15. 설계자문 및 심의 위원회 운영 16. 부패방지업무 추진 17. 고충민원 처리 18. 직소민원 처리 19.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운영 20.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집단 민원 해소대책 총괄 추진 21. 홈페이지 민원·건의사항 처리 22. 120생활민원 운영계획수립 23. 120생활민원신고 접수 및 관련부서 이첩 24. 120생활민원 신고사항 이행여부 확인 및 관리 25. 민원 콜센터 운영 전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에 따라 익산시 본청의 국장·과장·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장·담당관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합의제행정기관---------- 과장·담당관,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분장 ----------.
제2조(직무) (생 략)	제2조(직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합의제행정기관인 익산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위원회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사무분장)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별 과장·담당관의 분장사무와 읍·면·동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제3조(사무분장) ---------- 분장사무 및 감사위원장의 분장사무는 ----------

	별표 5---------.
제6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ㆍ제8조 (생 략)	제6조ㆍ제7조 (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
제2절 국 <신 설>	<삭 제> 제2절 국
제9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0조(경제관광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투자유치과장ㆍ문화관광산업과장ㆍ역사문화재과장ㆍ체육진흥과장은 각각	제9조(경제관광국) ----------신성장동력과장ㆍ문화관광산업과장ㆍ역사문화재과장ㆍ체육진흥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1조、제12조 (생 략)	제10조、제11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
제13조(환경안전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환경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환경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청소자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시민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늘푸른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	제12조(환경안전국) ---------- 위생과장--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4조(건설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개발과장·도시재생과장·주택과장·도로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전략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조(건설국) ----------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장 직속기관	<삭 제>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삭 제>
<신 설>	제3장 직속기관
<신 설>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제15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6조(하부조직) ① (생 략)	제15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	②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

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건사업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건사업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 ----------.
제2절 농업기술센터	<삭 제>
<신 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7조·제18조 (생 략)	제16조·제17조 (현행 제17조 및 제18조와 같음)
	<삭 제>
제4장 사업소 및 출장소	제4장 사업소 및 출장소
<신 설>	<삭 제>
제19조(단장 등의 직급) 사업소·출장소에 두는 사업소별 단장의 직급과 소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제18조(단장 등의 직급) ---------- 별표 6과 ---.
제5장 하부행정기관	<삭 제>
<신 설>	제5장 하부행정기관
<신 설>	제20조(감사위원회) ① 익산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하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 따라 개방형 직위로 임용해야 하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1조에 따라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20조(읍ㆍ면ㆍ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17조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읍ㆍ면장 및 동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제19조(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별표 7-----.
<신 설>	제6장 합의제 행정기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사무분장사항(본청)	[별표 1] 사무분장사항(본청)

과·담당관	분 장 사 무
---	---
감사담당관	1. 자체 행정감사 실시 및 처리 2. 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지시사항 처리 3.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4.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5.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업무 6. 특별감사 및 특명감사 7. 감사동향 관리 8. 국가기강 확립 추진 9. 기강 감사(직무감찰) 10. 공무원 비위조사 및 예방 11. 공무원 범죄수사 및 처분결과 통보사항 처리 12. 일상감사(설계 적정성, 설계변경, 원가심사) 13. 정책감사 14. 건설현장 점검 15. 설계자문 및 심의 위원회 운영 16. 부패방지업무 추진 17. 고충민원 처리 18. 직소민원 처리 19.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운영 20.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집단 민원 해소대책 총괄 추진 21. 홈페이지 민원·건의사항 처리 22. 120생활민원 운영계획수립 23. 120생활민원신고 접수 및 관련부서 이첩 24. 120생활민원 신고사항 이행여부 확인 및 관리 25. 민원 콜센터 운영 전반 26. 삭제 <2019.03.15.>
---	---

과·담당관	분 장 사 무
---	---
<삭제>	
---	---

현 행

[별표 1]

사무분장사항(본청)

과·담당관	분 장 사 무
---	---
투자유치과	1. 시정발전 산업육성 전략 개발 및 전략적 우선순위 조정 2. 산업정책, 자동차기계 및 부품소재 산업에 관한 사항 3. 과학정책 및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육성 및 정책개발 5. 지역혁신 연구개발(R&D)특성화사업 연구지원 6. 방사선, 나노산업 연구지원 7. 기업유치 종합계획 수립 8. 외국기업 투자정보 분석 관리 9. 해외 잠재투자자 발굴 관리 10. 기업투자 설명회 11. 시장개척, 통상지원 12. 기업애로 해소 시책추진 13. 현장기업애로 상담 14. 기업정보 및 동향관리 15. 서울투자유치사무소 업무 전반 가. 공공단체 및 재경향우회 등 기업유치 협조체계 구축 나. 기업정보 및 동향관리 지원 다. 시장개척 및 통상지원 협조 라. 각종 향우회 및 기업인 기업유치 홍보 마. 미분양 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 바. 시정 및 관광, 향토특산물 등 홍보지원 사.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16. 공장용지 분양계획 수립 및 분양계약 추진 17. 공장용지 매각 체결 및 대금징수 18. 미분양 공장용지 관리(소각장, 매립장, 변전소 관리 포함) 19. 민관 공동사업 추진(공장용지 분양)

개 정 안

[별표 1]

사무분장사항(본청)

과·담당관	분 장 사 무
---	---
신성장동력과	1. 시정발전 산업육성 전략 개발 및 전략적 우선순위 조정 2. 산업정책, 자동차기계 및 부품소재 산업에 관한 사항 3. 과학정책 및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육성 및 정책개발 5. 지역혁신 연구개발(R&D)특성화사업 연구지원 6. 방사선, 나노산업 연구지원 7. 기업유치 종합계획 수립 8. 외국기업 투자정보 분석 관리 9. 해외 잠재투자자 발굴 관리 10. 기업투자 설명회 11. 시장개척, 통상지원 12. 기업애로 해소 시책추진 13. 현장기업애로 상담 14. 기업정보 및 동향관리 15. 서울투자유치사무소 업무 전반 가. 공공단체 및 재경향우회 등 기업유치 협조체계 구축 나. 기업정보 및 동향관리 지원 다. 시장개척 및 통상지원 협조 라. 각종 향우회 및 기업인 기업유치 홍보 마. 미분양 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 바. 시정 및 관광, 향토특산물 등 홍보지원 사.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16. 공장용지 분양계획 수립 및 분양계약 추진 17. 공장용지 매각 체결 및 대금징수 18. 미분양 공장용지 관리(소각장, 매립장, 변전소 관리 포함) 19. 민관 공동사업 추진(공장용지 분양)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사무분장사항(본청)	[별표 1] 사무분장사항(본청)

과·담당관	분 장 사 무
	20. 공장등록, 설립 승인 및 관리 21. 중소기업 창업계획 승인 및 관리 22. 중소기업육성 자금 23. 신용보증, 금융지원 24.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관리 업무 전반 25. 입주업체 협의회 운영 26.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관리 27. 지역 향토기업과 공공브랜드 활용 공동마케팅 체계 구축 28. 기업관련 지적재산권(캐릭터 등) 업무 29. 전통산업 육성 전략 수립 30. 석재산업 육성 지원 31. 돌문화축제 지원 32. 섬유, 니트산업 육성 지원 33. ECO융합섬유연구원 지원 34. 노사관계 관련 업무 35. 노동조합 규약 및 단체협약 심사 36. 노사정협의회 구성·운영 37. 노사동향관리 38. 노사분규 예방 및 조정 지도 39. 노조지원 40. 임금·단체협약 교섭 지도 41. 노동상담소 운영 42. 노동복지회관 관리 43.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 육성사업 추진 44.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 지원센터 설립 및 관련 산업 업무 지원 45. 한류패션산업에 대한 정책 개발

과·담당관	분 장 사 무
	20. 공장등록, 설립 승인 및 관리 21. 중소기업 창업계획 승인 및 관리 22. 중소기업육성 자금 23. 신용보증, 금융지원 24.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관리 업무 전반 25. 입주업체 협의회 운영 26.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관리 27. 지역 향토기업과 공공브랜드 활용 공동마케팅 체계 구축 28. 기업관련 지적재산권(캐릭터 등) 업무 29. 전통산업 육성 전략 수립 30. 석재산업 육성 지원 31. 돌문화축제 지원 32. 섬유, 니트산업 육성 지원 33. ECO융합섬유연구원 지원 34. 노사관계 관련 업무 35. 노동조합 규약 및 단체협약 심사 36. 노사정협의회 구성·운영 37. 노사동향관리 38. 노사분규 예방 및 조정 지도 39. 노조지원 40. 임금·단체협약 교섭 지도 41. 노동상담소 운영 42. 노동복지회관 관리 43.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 육성사업 추진 44.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 지원센터 설립 및 관련 산업 업무 지원 45. 한류패션산업에 대한 정책 개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사무분장사항(본청)	[별표 1] 사무분장사항(본청)

과·담당관	분 장 사 무
	46. 한류패션브랜드 개발 및 지원 47. 한류패션기업 유치 및 홍보, 기업투자 설명회 48. 한류패션기업 투자정보 분석 및 지원 49. 익산패션주얼리공동연구개발센터 운영 50. 주얼리집적산업센터 운영(임대료 및 공공요금 부과징수 포함) 51. 기업애로해소 시책추진 52. 국내복귀기업 등 보조금지원 53. 국내복귀기업 등 이차보전지원 54. 국내복귀기업 등 인력확보지원
---	---
도시재생과	--- 20. 도시경관계획 수립 21. 경관가이드라인 제정 및 운영 22. 경관가이드라인에 의한 협의 23. 경관위원회 및 경관관련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24. 경관지구, 미관지구 건축물 자문.협의 25. 경관협정 지원 및 경관사업 추진 26.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운영 27.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운영 28.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한 자문.협의 29. 공공디자인 마인드 교육 30. 셉테드 생활안전 환경디자인사업 추진
---	---

과·담당관	분 장 사 무
	46. 한류패션브랜드 개발 및 지원 47. 한류패션기업 유치 및 홍보, 기업투자 설명회 48. 한류패션기업 투자정보 분석 및 지원 49. 익산패션주얼리공동연구개발센터 운영 50. 주얼리집적산업센터 운영(임대료 및 공공요금 부과징수 포함) 51. 기업애로해소 시책추진 52. 국내복귀기업 등 보조금지원 53. 국내복귀기업 등 이차보전지원 54. 국내복귀기업 등 인력확보지원
---	---
도시개발과	--- 46. 도시경관계획 수립 47. 경관가이드라인 제정 및 운영 48. 경관가이드라인에 의한 협의 49. 경관위원회 및 경관관련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50. 경관지구, 미관지구 건축물 자문.협의 51. 경관협정 지원 및 경관사업 추진 52.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운영 53.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운영 54.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한 자문.협의 55. 공공디자인 마인드 교육 56. 셉테드 생활안전 환경디자인사업 추진
---	---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신설>

<신설></td><td>[별표 5]
사무분장사항(합의제행정기관)

<table>
<tr><th>기관명</th><th>분 장 사 무</th></tr>
<tr><td>감사위원회</td><td>1. 자체 행정감사 실시 및 처리
2. 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지시사항 처리
3.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4.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5.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업무
6. 특별감사 및 특명감사
7. 감사동향 관리
8. 국가기강 확립 추진
9. 기강 감사(직무감찰)
10. 공무원 비위조사 및 예방
11. 공무원 범죄수사 및 처분결과 통보사항 처리
12. 일상감사(설계 적정성, 설계변경, 원가심사)
13. 정책감사
14. 건설현장 점검
15. 설계자문 및 심의 위원회 운영
16. 부패방지업무 추진
17. 고충민원 처리
18. 직소민원 처리
19.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운영
20.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집단 민원 해소대책 총괄 추진
21. 홈페이지 민원·건의사항 처리
22. 120생활민원 운영계획수립
23. 120생활민원신고 접수 및 관련부서 이첩
24. 120생활민원 신고사항 이행여부 확인 및 관리
25. 민원 콜센터 운영 전반</td></tr>
</table>
</td></tr>
</table>

현 행

[별표 5]

사업소·출장소의 단(소)장의 직급(제19조 관련)

단 및 사업소명	단(소)장	과 장	
		직 위	직 급
---	---		
시립도서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		

[별표 6]

읍.면.동장의 직급(제20조 관련)

기 관 별	직 위	직 급
---	---	---
오산면행정복지센터	오산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	---	---

개 정 안

[별표 6]

사업소·출장소의 단(소)장의 직급(제18조 관련)

단 및 사업소명	단(소)장	과 장	
		직 위	직 급
---	---		
<삭제>	<삭제>		
모현시립도서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영등시립도서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	---		

[별표 7]

읍.면.동장의 직급(제19조 관련)

기 관 별	직 위	직 급
---	---	---
오산면행정복지센터	오산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익산시 중앙동 공고 제2020-12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익산시공인조례 제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공인의 등록 및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14.

익 산 시 장

◉ 공인 등록 및 폐기 내역

구분	공인명	인 영	규 격 (mm)	교부 사유	최초 사용 년월일	관수 부서
등록	익산시장인 중앙동장전용 (인증기용)		30×30 정사 각형	신조 등록	등록일 2020.12.14.	중앙동
	중앙동장인 민원사무전용 (인증기용)		21×21 정사 각형			
폐기	익산시장인 중앙동장전용 (인증기용)		30×30 정사 각형	인증기 폐기	폐기일 2020.12.14.	중앙동
	중앙동장인 민원사무전용 (인증기용)		21×21 정사 각형			